

제11장 경쟁

제11.1조 목적

양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서 왜곡되지 아니한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, 경쟁법¹ 및 정책의 이행, 그리고 경쟁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양해한다.

제11.2조 법 집행 원칙

1.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증진하는 포괄적인 경쟁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며,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.
2.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.
3.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은 투명성, 시의적절성,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.

제11.3조 이행

1. 양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 집행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, 법과 규정에 규정된 면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정 경쟁을 다루고 있는 자국 법과 규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.
2.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에 규정된 모든 면제는 투명하고 공공 정책이나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.
3.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모든 공식적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관련 사실의 조사 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논거 및 법률적 분석을 기술하도록 보장한다. 각 당사국은 그 결정이 관련 당사자에 통보되도록 더욱 보장한다. 그 결정본은 자국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하여 대중 공개로부터

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의 경쟁법은 다음을 효과적으로 다룬다.

- 가. 시장 내 신규 진입 방해, 경쟁의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이나 효과로서 가지는 기업 간 합의, 기업 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관행
- 나.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또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, 그리고
- 다. 기업의 흡수합병, 기업의 신설합병, 기업의 영업양수, 기업 간 합작투자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 결합을 구성하는 기업의 행위인 경제적 결합

보호되는 영업비밀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한쪽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 정책과 관행에 관한 공공 정보를 요청 당사국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

5. 각 당사국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인에게 심리에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.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자국 경쟁법에 따라 행정 재심과 사법적 재심을 통하여 그 제재 또는 구제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회를 제공한다.

제11.4조 경쟁법의 적용

1.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들은, 국가 소유이든 민간 소유이든 그 소유권에 관계없이, 제11.2조에 언급된 경쟁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. 다만, 그러한 규칙의 적용은 그 기업에게 맡겨진 특정한 공공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2. 각 당사국은 국가 독점 분야 및 영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자국 경쟁법에 근거하여 어떠한 반경쟁적 행위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.

제11.5조 협력

1. 양 당사국은 각국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시키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,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방식으로, 그리고 자국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협력하는 것에 합의한다.

2.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지했을 때,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적절한 때에 통보한다. 다만, 그 통보는 각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고,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3.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자국의 중요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때에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그러한 요청은 관련 경쟁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완전한 자유를 저해하지 아니한다.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그리고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호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.

제11.6조 정보의 교환

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, 다른 쪽 당사국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자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 다만, 이는 비밀 정보가 아니어야 한다.

제11.7조 비밀 유지

1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경쟁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제공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.
2. 한쪽 당사국 경쟁당국은 정보를 제공한 경쟁당국이 승인하지 아니한 그 어떤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11.8조 협의

1. 양 당사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, 그리고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을 개발, 유지, 및 집행할 각 당사국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,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요청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. 그러한 요청 시, 각 당사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.
2.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.

제11.9조 기술 지원

양 당사국은 경쟁 분야에서 양국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음의 기술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- 가. 경쟁법 및 정책의 증진과 집행에 관련된 경험의 교환
- 나.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교환
- 다. 훈련 목적의 공무원 교환
- 라. 경쟁법 및 정책에 관한 자문가 및 전문가 교환
- 마. 강연자, 자문가, 또는 참석자로서의 공무원의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한 훈련 과정 참여
- 바. 경쟁 주창 프로그램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

- 사. 경쟁 주창 및 경쟁 문화 증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, 그리고
- 아.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기술협력

제11.10조 분쟁해결

제15장(분쟁해결)의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.

제11.11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, 그리고
- 나. 베트남의 경우, 경쟁청 및 경쟁위원회
또는 각각의 승계기관, 그리고

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과 그 이행 규정,
- 나. 베트남의 경우, 「베트남 경쟁법」과 그 이행 규정, 그리고
- 다. 이 협정 발효 후 상기 언급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